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2018. 3.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목 차

I. 지방세법령 개정사항	1
II.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8
III. 법인지방소득세 총칙	12
IV.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6
1. 과세체계	16
2. 과세표준과 세액	17
3. 신고·납부	23
4. 특별징수	42
5.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9
V.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48
VI.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53
VII.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55
VIII.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59

1. 지방세법령 개정사항

지방세법 및 시행령

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법 제87조, 제103조의21~22, 제103조의31, 제103조의35)

<개정내용>

- (중전)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10%
※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 종료('17.12.31.)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10%

②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명확화(법 제89조)

<개정내용>

- (중전)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납세지 준용
- (개정) 납세자 신고편의 및 지자체 세입귀속 명확화를 위해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 납세지 규정에 시간적 개념을 포함

③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법 제92조)

<개정내용>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5억원 3.8%→4.0%, 5억초과 4.0%→4.2%

④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규정 보완(법 제95조)

<개정내용>

- (중전)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관련 규정 미비
- (개정) 국세와 동일하게 확정신고를 하도록 관련 규정 보완

⑤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규정 보완(법 제103조)

<개정내용>

- (중전)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평가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과세표준 조항 미비
- (개정) 국세 개정('16.12월말)사항 반영을 위해 국외전출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규정 추가

⑥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법 제103조, 영 제100조)

<개정내용>

- ①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5억원 4.8%→5.0%, 5억 초과 5.0%→5.2%
- ②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구분		소득세율		개인지방소득세율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대주주	1년이상 보유 3억원 초과 주식	20%	25%	2%	2.5%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관련은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19.1월부터 시행

- ③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18.1.1.부터 시행)

보유기간	소득세율		개인지방소득세율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년 이내	50%	50%	5%	5%
1년 이상 2년 미만	40%		4%	
2년 이상	6%~40%		0.6%~4%	

※ (분양권 중과 제외 대상 규정) 30세 이상 무주택자(30세 미만 혼인 포함)로 다른 주택 분양권이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 ④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18.4.1.부터 시행)

- 표준세율(0.6%~4.2%)에 1%(3주택 이상은 2%)를 가산하여 과세

※ (다주택자 중과 제외 주택범위 규정) 장기임대주택, 조특법상 감면 대상인 미분양 주택,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사원용 주택, 5년내 상속받은 주택, 문화재 주택 등

⑤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18.4.1.부터 시행)

-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에 따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인상(5%→10%)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0.5%→1%)

⑧ 양도소득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법 제103조의9)

<개정내용>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 → 가산세 부과

* 실지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 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계산

※ (적용대상) 건물 신축하여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 (가산세율) 0.5%

⑨ 법인지방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법 제103조의20)

<개정내용>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2.2%→2.5%)

⑩ 법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규정 추가(법 제103조의23)

<개정내용>

- (종전)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따라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 신고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근거가 불명확
- (개정) 확정신고 세액 계산시 공제대상 금액에 '비영리법인의 양도 소득 예정신고세액'을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보완

11 안분신고 의무 강화 및 일괄 경정청구 명확화(법 제103조의24)

<개정내용>

- ① 안분오류 신고시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의미 구분 ※ 제103조의24②③④
- ② 안분신고 과세형평성 제고 ※ 제103조의24⑥
 - (중전) 확정신고 이후 수정신고시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수정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면제되어 과세 불형평성 발생
 - (개정) 안분대상 법인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른 수정신고 시에도 정확한 안분 신고 유도를 위해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가산세 부과 규정 추가
- ③ 일괄 경정청구 명확화 ※ 제103조의24⑤
 - (중전) 법인 본점의 이전으로 일괄 경정청구하는 해당 귀속연도의 본점 소재지와 다를 경우, 일괄 경정청구 대상 자치단체가 불명확
 - (개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지자체에 일괄 경정청구토록 규정 명확화

12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제재 강화(법 제103조의25, 제103조의64, 영 제103조의38)

<개정내용>

- (중전)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 시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후 남은금액을 환급
 - (개정)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제재를 국세와 동일한 수준(과다납부 세액의 20%를 한도로 매년 공제)으로 강화
- ※ 이 법 시행('18.1.1.) 후 경정청구한 분부터 적용

13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법 제103조의28)

<개정내용>

- (종전)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결손금 소급 공제대상에서 제외 → 다음연도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차감
-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중 '신고기한'을 완화하여 납세자 불이익 방지(법인세 환급시 법인지방소득세도 환급)

14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규정 정비(법 제103조의59)

<개정내용>

- (종전)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하였다면, 향후 경정청구를 신청하더라도 환급이 불가하나,
 -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 따라 국세청 환급자료 통보 시 환급해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납세자 및 과세관청 혼란
- (개정)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환급 자료에 의해 무조건 환급되지 않도록,
 - 「지방세법」 제103조의59 규정에서 법인세 환급자료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규정은 삭제

15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13427호, '15. 7. 24. 부칙 제5조)

<개정내용>

- (종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는 '18년말까지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상 소규모 임대소득자 비과세 적용기한을 '16.12.31.에서 '18.12.31.로 연장('16.12월 개정)
- (개정) 국세와 동일하게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19.1.1. 이후부터 분리과세 적용되도록 부칙 개정

16 납세조합에 대한 징수교부금 조정 근거 마련(영 제100조의9)

<개정내용>

- (중전)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지자체에 납부시, 지자체는 납세조합이 납부한 금액의 5%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 가능 ※ (신청기한) 특별징수세액을 납입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에 환급이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금을 차감 조정할 근거규정이 없음
- (개정)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징수교부금 지급시 차감하여 징수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 ※ 이 영 시행일('18.3.27.) 이후에 발생하는 환급분부터 적용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1 과소신고가산세 등 적용배제사유 추가(법 제54조, 제55조)

<개정내용>

-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증여의제 이익이 감소하여 양도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될 경우

*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 의 정상거래비율(30%~50%)을 초과하는 법인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적용 배제

※ 증여의제이익이 감소될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 양도소득세 대상 주식 <u>취득가액(↓)</u> = 당초 취득가액 + 증여의제이익(↓)
▶ 양도당시 <u>주식평가액 - 주식 취득가액(↓)</u> =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 '18.1.1.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적용

②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감면 확대(법 제57조, 영 제36조)

<개정내용>

- (중전) 법정신고기한 이후 6개월내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20%~50%)을 적용
- (개정) 예정신고기한에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이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하는 경우까지 가산세 감면(50%) 적용 확대

※ '18.1.1.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적용

③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설(법 제62조)

<개정내용>

- (중전) 분식회계 법인이 해산할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일반법인의 경정청구와 동일하게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임
- (개정) 분식회계 법인이 해산할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자치단체의 장이 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로 구분 적용

※ '18.1.1.이후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II.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흐름도

구 분	내 용										
◇ 과세표준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 ※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예: 조특법 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 세 율	○ 표준세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 <td>과세표준의 1천분의 10</td> </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 <td>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td> </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 <td>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td> </tr> <tr> <td>3천억원 초과</td> <td>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td> </tr> </tbody> </table> ○ 토지 등 양도소득 : 1%(미등기 4%)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0.9%(20억 초과 1.2%)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 없음										
(+)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신고 가산세 : 20%(40%) ※ 납부만 한 경우, 안분명세서 등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 - 과소신고 가산세 : 1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3%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 3%+1일 0.03% ○ 지방세법상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장,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불성실·지출증명 미수취가산세 등 (법인세 가산세 징수금액의 10%) 										
(+) 추가납부세액	○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상당가산액, 업무무관자산 비용 및 지급이자 추가납부 - 이월과세, 농업법인 등 추가납부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등										
(±)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13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경정·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세액(당초세액의 100분 10에 미달되는 경우)										
◇ 차감납부할세액											

1 과세대상

- 법인지방소득 : ① 각 사업연도소득, ② 청산소득, ③ 토지 등 양도소득, ④ 미환류소득
 - 법인소득의 경우 모든 종류의 소득이 법인장부에 기입되므로 소득의 구분 없이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
 - 해산 시 잔여재산의 자산가치 증가액(매각 전 미실현 가치 증가분에는 과세 않으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을 청산소득으로 과세
 -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장부에 기입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 되어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1~2.5%)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보다 낮아(0.6~4.2%) 투기방지를 위해 추가 과세
 - 대기업에 대하여 '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투자·임금·배당으로 환류 하지 않은 소득(=사내유보금)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함('17년말 일몰 종료)
 - ※ '18년 귀속부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조특법」 제100조의3제2항)

2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구 분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외 소득 모두 ※ 단, 국외납부세액은 이중과세 조정 위해 국세에서 세액공제	국내 원천소득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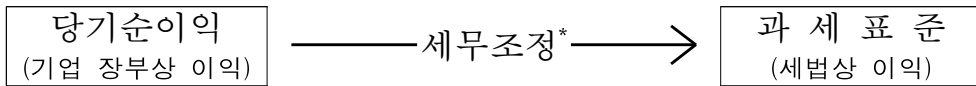
3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
 -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법인세는 3개월 이내)
 - ※ 안분계산 때문에 법인세 +1개월로 규정, 전체 법인의 95% 이상이 4월에 신고
 - ※ 연결법인의 경우는 5개월 이내에 신고

4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방식과 동일		※ (기존) 소득·법인세액(결정세액)
세율	법인분	2억원 이하	1.0%	※(기존)법인세액의 10%(탄력세율 적용)
		2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 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	
	특별징수	법인세액의 10%		
탄력세율	자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17.1.1.부터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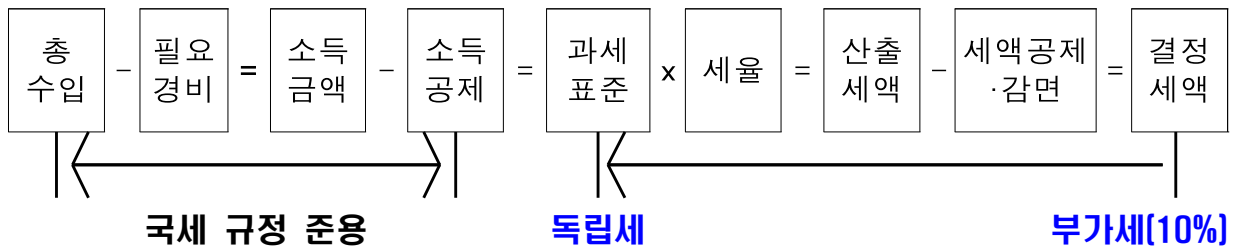
*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예) 접대비는 기업장부상으로 전액 비용이지만 세법상으로는 한도내 비용만 인정
⇒ 매출누락과 더불어 세무조사의 주된 영역임

5 법령 구조

< 지방소득세 과세 구조 >



* 부가세 구조 :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 독립세 구조 : 국세 과세표준 × 독립세율 -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 필요경비, 소득공제, 비과세 등은 과세표준 관련 사항은 「법인세법」 계산방식에 따름(법인세법 준용)
- 세율 및 세액계산 등 관련사항은 지방세법에 규정, 세액공제·감면 (법인은 해당 없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
- 지자체 조례로 탄력세율(표준세율에서 50% 가감) 및 공제감면 적용 가능

6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비율대로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left[\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right) +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right] \div 2$$

7 **납부(징수)방법**

- (신고납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법인	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Ⅲ. 법인지방소득세 총칙

□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 범위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지방 §86의①)

-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 (법법§2①)
-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
 -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
- 법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에 1%(미등기의 경우 4%)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

※ 법인구분별 과세소득 의 범위(법법 §3)

구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 소득
내국법인	영리* 법인	국내·국외 원천 소득	과세○	과세○	과세○
	비영리** 법인	국내·국외 원천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	과세X	과세X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	과세○	과세X	과세X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	과세X	과세X

※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법법 §2③), 외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인(법법 §1(4))에 해당됨

* 영리법인 : 영리(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비영리법인 : 학술·종교·자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지방세법」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清算所得)
3. 양도소득
4.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 사업연도

○ (개념)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으로 그 기간은 1년 초과 불가 (지법 §85 ① 11호 및 법법 §6)

구분		사업연도
법령·정관 등에서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인		· 법령·정관등에서 규정한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법인	사업연도 신고 ○	· 신고한 사업연도
	사업연도 신고 X	· 매년 1.1 ~ 12.31

- (사업연도의 변경)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함(법법 §7)
- (사업연도의 의제) 법인에게 해산·합병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구분(법법 §8)

❖ 사업연도의 의제

사유	사업연도	
해산시	1사업연도	1사업연도
	1.1	6.30 (해산·파산등기일) 12.31
잔여재산가액 확정시	1사업연도	
	1.1	7.10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분할에 의해 소멸시	1사업연도	
	1.1	7.20 (합병·분할등기일)
청산 중 사업계속시	1사업연도	1사업연도
	1.1	4.30 (사업계속등기일) 12.31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폐지시	1사업연도	
	1.1	6.30 (국내사업장 폐지)
외국법인의 부동산 소득 미발생시	1사업연도	
	1.1	5.31 (신고일)
설립무효·취소 판결시	1사업연도	
	1.1	5.1 (확정판결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1사업연도	
	1.1	4.30 (연결납세사업연도 개시일 전일)

▪ 「지방세법」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②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지법 §89 참조)

구분	납세지
내국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예외 :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
외국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예외 : 국내사업장 없고 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 소재지

-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그 사업장 소재지(지법령 §87① 참조)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IV.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 과세체계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요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 (지법 §103의19)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지법 §103의28)

⊗ 세율

- 세율 (지법 §103의20)

산출세액

- 세액계산 (지법 §103의21)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 소득(지법 §103의31)

⊖ 세액공제+감면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지법 §103의22)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

⊕ 가산세

- 가산세 (지법 §103의30)
-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법 §53의2,3,4)
- 가산세의 감면 (지법 §54)

⊕ 추가납부세액

- 이월과세 (지법 §119, §120, §126, §128) 등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기신고세액, 결정 · 경정세액, 수시부과세액
- ※ 해운기업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은 제외('18.1.1.이후 성립분)

납부할 세액

- 확정신고와 납부 (지법 §103의23)
- 수정신고 (지법 §103의24)

- 결정과 경정 (지법 §103의25), 수시부과결정 (지법 §103의26), 징수와 환급 (지법 §103의27)
- 특별징수의무 (지법 §103의29) ← 2015.1.1.부터 적용
-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의32)
- 연결법인 (제7절), 청산소득 (제8절), 외국법인 (제9절), 동업기업 (제10절)

□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법 §103의19)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 세 율

- 각 사업연도의 소득(지법 §103의20①)

과세표준	세 율	비고
2억 이하	1%	법인세 세율의 10%
2억 초과	2백만원 + (2억 초과하는 금액의 2%)	
200억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 초과하는 금액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17년말 신설된 3천억 초과구간은 '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가능(지법§103의20②)
(2017.1.1 이후부터 적용,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1 단서)

▪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2014.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계산방법

세법에 따른 계산방법 (지법 §103의20①)		누진공제액을 통한 계산방법 (신고서작성 등 실무에서 활용)																											
<계산방식> 전단계까지의 누진세액, 전단계까지의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해당 단계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		<계산방식>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																											
<세율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 <td>과세표준의 1천분의 10</td> </tr> <tr> <td>2억원 초과</td> <td>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td> </tr> <tr> <td>200억원 이하</td> <td>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td> </tr> <tr> <td>200억원 초과</td> <td>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200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세율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h>누진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 <td>1%</td> <td>-</td> </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 <td>2%</td> <td>200만원</td> </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 <td>2.2%</td> <td>4,200만원</td> </tr> <tr> <td>3천억원 초과</td> <td>2.5%</td> <td>9억 4,200만원</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만원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4,200만원	3천억원 초과	2.5%	9억 4,200만원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200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만원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4,200만원																											
3천억원 초과	2.5%	9억 4,200만원																											

□ 세액계산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지법 §103의21 참조)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left(\text{과세표준} \times \frac{12}{\text{사업연도의 월수}} \right) \times \text{세율} \times \frac{\text{사업연도의 월수}}{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 세액공제 및 감면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함(지법 §103의22 참조)
 - '15년 귀속 기준 지특법상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는 §167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만 규정
 - 세액공제 및 감면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미환류 소득*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임
- * 기업이 당해연도 발생 소득을 직원이나 주주들에게 상여금이나 배당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소득(사내유보금)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 167)

-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100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 72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또한 동일하게 적용됨(지방세법 제103조의19)
 - 당기순이익 과세포기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신설법인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당기순이익 과세 미적용

▪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에 1%(미등기의 경우 4%)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지법 §103의31)

- ❖ '09.3.16.~'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 과세 제외(지법 법률 제12505호 부칙 §5, 지법 법률 제14475호 부칙 §8)
- ❖ 법법 §25 ① 1호 중소기업은 지법 법률 제12505호 부칙 제 5조에 의해 '15.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미등기 토지 등 제외)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하여 납부

○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

$$\text{토지 등 양도소득}^* = \text{토지 등의 양도금액} - \text{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과세대상이 되는 2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산 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으로 함

-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그 양도차손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차감

※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서 차감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 달리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양도비용은 차감 불가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라 내국 법인(연결법인을 포함)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

참고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미환류소득금액 × 10%

- 미환류소득 : 아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

구분	미환류소득 금액
투자포함방식	(기업소득×80%)-(자산투자액+직원임금증가액+배당액+상생협력지출금액)
투자제외방식	(기업소득×30%)-(직원임금증가액+배당액+상생협력지출금액)

-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아래의 항목을 가감한 금액(음수인 경우 0으로 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가산(+)	① 국세·지방세 환급가산금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③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중 차기 추인액 ④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한 자산투자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당해 손금산입액
차감(-)	① 법인세(농특세포함)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② 상법상 이익준비금 ③ 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④ 당해 공제한 이월결손금 ⑤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퇴직급여 중 손금산입하지 않는 금액 ⑥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⑦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액(3년경과분)
=	기업소득

- 자산투자액 : 아래 자산의 구입액(중고품과 리스자산 제외)

- ①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운반구, 선박, 항공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용 고정자산
- ②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및 그에 직접 사용된 토지
- ③ 무형고정자산(영업권 제외)

- 직원(임원등 제외)임금증가액 : 다음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

-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 ②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③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시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 배당액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50을 곱한 금액

①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중간·분기배당 포함, 자본준비금 혹은 이익준비금 감액분 제외)

② 취득후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

- 상생협력지출금액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금액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④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대상 법인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 자기자본 = 재무상태표상 자산합계 - 재무상태표상 부채합계

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4월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

초과환류액의 이월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 가능

미환류소득의 이월(차기환류적립금)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 가능

- 차기환류적립금 적립시 납부세액 = (전기의 차기환류적립금-초과환류액) × 10%

※ 음수인 경우 영으로 봄

사후관리

매입시 자산투자액으로 공제한 자산을 매입일로부터 2년내 양도·대여하거나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기 공제한 세액에 이자(1일 3/10,000의 이자율을 적용)를 가산하여 납부

※ 이자계산기간 : 투자금액 공제받은 연도의 법인세 신고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 확정신고 및 납부

- (신고기한)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지법 §103의23 참조)

❖ **납부할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 가산

** 해운기업의 특별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18.1.1.이후 성립분)

- 톤세제도는 해운소득 계산시 실제소득이 아닌 선박톤수와 운항일수에 의해 산출된 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므로, 법인세와 동일하게 특별징수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음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내국법인 신고기한연장 관련 유의사항

법인세는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연장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의 기한연장 신청제도가 없음에 유의할 것

- ※ (예시) 12월말 결산법인의 2017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된 경우 2018.4.30.(월)까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 (참고)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경우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내 신고 납부 (§91 ①)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③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④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
- ⑤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⑥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
- ⑦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합병법인)

※ ①~④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로 간주. 단, 둘 이상의 지자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방 제103조의23 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사업장별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인정('16년부터)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출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유의사항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과
☞ 참고)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경우 신고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91 ⑤)하였으나, 해당조항은 삭제
- '17년 신고분부터 '안분신고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신고서'와 통합하고, 안분신고 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 제출하도록 안분신고 서류 간소화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요약표

구 분	관련조문	서식	비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안분율 및 납세지별 세액 포함(안분신고서 통합)	지칙 §48의4①	43호	기준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지칙 §48의4②	43호의2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17.1.1. 이후 신고분부터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	지칙 §48의4③	44호의6	첨부서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지칙 §48의4⑤	43호의3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지칙 §48의4⑤	43호의4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을)(병) -'17.1.1. 이후 신고분부터 (병)서식 추가	지칙 §48의4⑤	43호의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지칙 §48의4⑤	43호의9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지법 §103의23②		첨부서류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	지령 §100의12⑤		첨부서류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만 해당)	지령 §100의12⑤		첨부서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승계한 자산 및 부채 명세서·소재지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합병 법인만 해당)	지령 §100의12⑤		첨부서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별징수세액명세서(부표포함),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부표포함), 안분명세서	지칙 §48의9①	43호의5 43호의6 44호의6	기준서식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	지칙 §48의9②	43호의10	기준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지법 §89 ②)
 -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신고·납부
 - ※ 본점(주사무소)이 없을 경우: ①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②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
-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지법 §103조의24 ⑥)
- (안분순서) ① 산출세액 계산 → 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사업장 면적 안분 → ③ 관할 지자체의 탄력세율 반영한 세액을 가감 → ④ 지자체별 공제·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반영

적용요령

- 자치단체별 신고·납부세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다음 지자체별 사업장 안분율(이하 “안분율”이라 함)에 따라 안분

$$\left(\frac{\text{관할 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관할 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② 세액공제·감면 → 지자체별 공제·감면세액을 차감
- ③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등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는 해당 지자체별 적용 가산
 - ※ 단 지방세법 제103조의30 가산세는 안분율에 따라 안분 가산
- ④ 기납부세액 (특별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
 - 특별징수된 기납부세액은 안분율에 따라 지자체별로 안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 초과납부하여 환급세액(특별징수세액)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본점 소재지 지자체 신고서의 납세지별 기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 수시부과된 기납부세액은 해당 자치단체의 산출세액에서 차감
- ⑤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舊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기입하는 경우, 舊 지방세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및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가감

*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부가세 방식)

**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독립세 방식)

안분시 고려사항

- 사업장: 인적 설비(종업원) 또는 물적 설비(건축물 등)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모델하우스 등 기설건축물, 건설현장사무소, 연구시설, 기숙사, 연수원 등)
 - ※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안분방법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4] 참조
- 종업원 :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외근무자는 제외
 - ※ 종업원에 대한 구체적 안분방법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4] 참조
-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 ※ 다만,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
- 사업장용 건축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임
 - ※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업장 안분면적에 불포함, 법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
- 안분계산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고지하기 전까지는 가산세 부담없이 수정신고 할 수 있음
 - ※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17년 개정)

안 분 방 법

산출세액	
(×) 안분율	
사업장별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
사업장별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차감납부할세액	

- 전체사업장 공통 공제·감면일 경우 안분하여 차감.

- 특정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공제·감면일 경우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장별 산출세액에서만 차감

※ '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감면 규정 없음

- 전체사업장 공통일 경우 안분하여 가산

[특별징수납세지와 상관없이 기납부세액을 아래의 방법으로 안분]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

- 기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 초과분은 본점 기납부에 더함

※ 특별징수세액은 지방자치단체간 정산

- 舊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및 동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적용 기준(지칙§38의5 관련) [지칙 별표 4]

1. 종업원 수	
구 분	적 용 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 분	적 용 례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 사무소의 연면적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 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사. 기계장치의 범위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적용요령

-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파견되어 계약업체의 사업장 내 일정한 장소에서 계약업체의 목적사업을 함께 수행할 경우, 파견된 직원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될 것이며,
 -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용역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될 것임

※ (예시) (주)00자동차의 주요부품 제조에 필요한 인력 00명을 (주)00부품과의 하도급 계약 체결 후 2년간 (주)00자동차의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
⇒ (주)00자동차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종업원 수에 포함

-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계약업체 직원과 구분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인사 및 급여 지급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계약업체 직원과 구분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인사·급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근무기간의 1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업체가 아닌 용역 및 협력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되어야 함

※ (예시) A법인이 내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00정보시스템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10명을 파견 받아 A법인 내 별도 사무실에서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할 경우,
⇒ 파견직원 10명은 (주)00정보시스템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종업원 수에 포함

- 법인의 소속직원이 사업장 등 일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경우, 인적설비만을 갖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
 -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해야 함

※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영업사원의 경우 실제 지역별 영업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는 별도 소속된 영업소의 종업원 수에 포함

※ (예시) (주)00보험 소속의 보험모집인이 지점 등 일정한 장소가 없이 보험모집인의 주소지 등에서 영업활동을 할 경우
⇒ (주)00보험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시 본사의 종업원으로 포함

- 공장 등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후생복지시설 중 임·직원의 기숙사,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를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종업원이 사용하는 기숙사는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주거전용시설에 해당하는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음

안분사례

Q)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의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부담 계산 (현행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규정 계속유지 가정)

- 법인세 기타 자료 : 공제세액 1,000만원, 중간예납 500만원, 주주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00만원
- 종업원수 및 사업장 면적 현황

구 분	종업원수	사업장면적		안분율
A지방 본점	40	90	→	25%
B지방 지점	60	120		35%
C지방 사무소	100	90		40%
합 계	200	300		100%

<사례>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5.4.30 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계산내역

구 분	산출세액	안분 ²⁾	가산세 ³⁾	납부할세액
A지방	400 ¹⁾	100	5	105
B지방		140	7	147
C지방		160	8	168
합 계	400	400	20	420

- 1) 산출세액 계산 : 200만원+(3억-2억)×2% = 400만원
- 2) 안분세액 계산 : 400만원×자치단체별 안분율 = 100, 140, 160만원
- 3) 가산세 안분 : 20만원×자치단체별 안분율 = 5, 7, 8만원

<참고> 법인세 계산내역

- ① 산출세액 : 2,000만원+(3억-2억)×20% = 4,000만원
 - ② 납부할세액 : 4,000만원-1,000만원+200만원-500만원 = 2,700만원*
- *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3,200만원이나 중간예납시 납부한기납부세액 500만원이 있으므로 차액인 2,700만원을 확정신고시 납부

적용요령

- (질의요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사업장별로 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학교법인의 소속 학교도 사업장으로 보아 교실 등 면적과 교직원 인원수까지 포함하여 안분비율을 산출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야 함을 의미함 <행자부 지방세정책과-2189, 2014.7.11.>

- (질의요지) 원자력발전소의 방파제와 호안을 원자력발전을 위한 냉각용 해수의 급·배수시설로 보아 사업장 연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방파제와 호안은 부지 내 건축물(급·배수시설 포함)을 보호하고 급·배수 시설 내에 토사 등 불순물이 유입되는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 사업장 연면적에 포함하기가 어려움 <지방세운영과-741, 2011.2.18.>
- (쟁점사항) 창고업자의 창고에 청구인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사항) 창고업자와 창고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74% 내지 80%의 면적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법인의 사업장에 해당 <감심 1999-168, 1999.4.6.>
- (쟁점사항) 처분청이 가스관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치로 보고 가스관 면적을 건축물연면적에 포함하여 시·군별로 안분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사항) 쟁점가스관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에 해당하거나 기계를 작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기계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안분대상 건축물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조심2015지1522, 2016.10.31.>
- (쟁점사항)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 공실인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대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사항) 아파트가 2011.11.30. 준공된 점, 이 건 아파트 준공 후 쟁점건축물의 전력사용량 및 상수도사용량이 급감한 점, 2011.11.13.이후부터 승강기 운행이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1년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 쟁점건축물 중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안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지0366, 2013.11.21.>
- (쟁점사항) 정수장의 침전지 및 정수지 등의 시설물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대상 시설물인 저장시설(저장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사항)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법인세할) 안분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유입부와 유출부가 연결되어 앞 수처리시설에서 다음 수처리시설로 연속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설치된 정수장의 시설물(착수정 → 혼화지 → 침전지 → 여과지 → 정수지 → 배수관로 → 수요자)은 물을 담아두는 수조 등 옥외저장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23지0196, 2012.9.17.>

- (질의요지) A법인(건물주)과 B법인(임차법인)의 공동사용 사무실이 120제곱미터 (전용면적 100, 공용면적 20)이고 사무실의 1/2 사용조건의 임대차 계약일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 방법은?

- 1)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계산시 사무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무실 면적의 1/2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 2) 위와 같이 안분하는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신내용) 건물소유주인 법인과 임차법인이 전용면적 100, 공용면적 20인 사무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용면적 50과 이를 기준으로 안분한 공용면적 10을 합산한 면적 60이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 <세정과-5472, 2011.4.26.>

- (질의요지)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를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안분대상 사업장인지?

(회신내용) 건설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를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물은 법인세할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할 수 없음 <지방세정팀-2114, 2006.5.25.>

- (질의요지) 건설업 영위 법인의 준공 아파트 사용승인일(2011.11.30.)이후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 및 모델하우스 내 본점사무실, 분양사무실)의 2011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시 공부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회신내용)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당해 법인의 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운영과-593, 2013.2.27.>

- (질의요지) 2009년 8월 연수원을 취득하여 경비원을 상주시킨 경우 2009 귀속사업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 해당여부

(회신내용)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경비용역 인원이 파견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장소는 법인세할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됨 <세제과-460, 2010.1.13.>

- (질의요지) 00사와 위수탁운영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당사의 종업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00시 소유의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회신내용) 00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과 시설의 재산관리를 위탁운영 범위로 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계획 및 예산 등을 00시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자원회수시설의 재산상의 권리와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수

익금은 00시에 귀속 되게 되어 있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변경(인원변경 및 가동 중단 등) 사항은 00시의 승인을 득하도록 체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귀사의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 <세정과-4652, 2007.11.8.>

- (질의요지) 법인세할 주민세의 건축물 연면적 안분시 공장내부가 공실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 산입 여부

(회신내용)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과세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나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벽돌공장 내부가 공실로 관리되는 등에 따라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에 산입하여 안분할 수 없다고 사료됨<세정13407-98, 2003.2.5.>

- (질의요지) 백화점과의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라 매장 임차 없이 외상으로 납품하고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장 면적과 파견 종업원을 납품업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여부

(회신내용)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른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의 소득으로 인식한 사례(서울행법 2010구합16240)를 보더라도 백화점 내 납품업체 운영매장은 납품업체의 사업장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적용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직접소유, 임차 여부 등과 관계 없다는 점, 종업원의 경우 파견직원(인적)과 백화점 내의 매장(물적)을 모두 갖추고 판매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라 백화점 내의 납품업체 운영매장과 파견직원은 납품업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방세정책과-3379, 2016.9.20.>

- 법인세분지방소득세를 시·군·구별로 안분함에 있어 파고라·포장도로·담·문·옥외야적장은 안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행자부 세정-1257, 2006. 3. 28.)
-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대상 사업장 범위 :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 영위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임(행자부 세정13430-385, 2002.4.23.)
- 공동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 판단 :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대하여는 공동도급공사 수행으로 현장사무소 등 업체별 건축물의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한 경우라면 행정수요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를 배분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각 참여업체별 지분율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 13407-1115, 2000. 9. 18.)

기납부세액(특별징수분) 안분 작성 방법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
 - [사례] 총부담세액 10,000원, 특별징수세액 3,000원, 본점 A시(70%), 지점 B시(30%), 특별징수지 C시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3,000원	A(본점) B(지점) (70%) (30%)	⇒	각 사업장에 안분신고
7,000원		⇒	차감납부세액 (안분신고납부)

① 특별징수 세액은 납세지에 관계없이 납세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② 해당 특별징수 세액은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 납부한 것으로 작성

구 분	사업장		특별징수지 C
	A(70%)	B(30%)	
총 부담세액	10,000원		징수세액
안분세액	7,000원	3,000원	3,000원
기납부세액	총액	3,000원	
	안분	2,100원	900원
차감납부할세액	4,900원	2,100원	

- 기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 초과환급금은 본점 가산
 - [사례] 총부담세액 10,000원, 특별징수세액 31,000원, 본점 A시(70%), 지점 B시(30%), 특별징수지 C시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10,000원	A(본점) B(지점) (70%) (30%)	⇒	총부담세액 안분
	21,000원	⇒	환급대상액은 본점에 가산

①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에 관계없이 납세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② 총부담세액은 사업장 소재지 안분

③ 환급세액은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구 분	사업장		특별징수지 C
	A(70%)	B(30%)	
총 부담세액	10,000원		징수세액
안분세액	7,000원	3,000원	31,000원
기납부세액	총액	3,000원	
	안분대상액	10,000원 (총부담세액)	
	안분	7,000원	3,000원
	본점가산(=환급)	21,000원 (31,000원 - 10,000원)	
	소계	28,000원	3,000원
차감납부할세액	-21,000	0	

□ 수정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지자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지방세법 §103의24①)
 - *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여 세무서로부터 법인세를 결정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기 전까지 납세자는 수정신고 가능
-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고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결정등의 청구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은 없음(지방세법 §103의24②,③ 참조)
 - 다만,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 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17년 개정)

유의사항

-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되는 세액의 多少에 상관없이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舊 지방세법의‘10% 미달시 가감신고 제도’ 폐지)
 - ☞ 2013.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당초 세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속하는 사업 연도분에 가감하여 신고 납부 가능 (舊 지법 91①단서)
- 세무서로부터 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결정고지 받은 경우 **고지서상 납부기한에 관계없이** 지방세관계법상 세율·가산세 등을 적용 하여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여야 함
 - ☞ 2013.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결정·결정고지를 받은 경우 고지 시기와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부가세 방식에 따라 고지서상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내 신고·납부 (§91 ①)

□ 결정과 결정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 (지법 §103의25 참조)

□ 수시부과결정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연도 중 내국법인에게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가능 (지법 §103의26①)

* 수시부과사유 (지령 §100의17① 및 법령 §108①)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수시부과는 사업연도와 상관없이 수시부과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며, 수시부과기간이 1년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세액을 계산 (지법 §103의26② 및 지령 §100의17②)

* 수시부과기간

- 일반적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 수시부과기간이 1년이 아닌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left(\text{과세표준} \times \frac{12}{\text{수시부과기간 월수}} \right) \times \text{세율} \times \frac{\text{수시부과기간 월수}}{12}$$

⇒ 지법 §103의26에 의한 수시부과 시 지법§103의30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법인세와 동일 적용)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및 환급 특례(지법 §103의64, '17년말 개정)

- (내용) '18.1.1 이후 경정청구 하거나 결정한 분에 대하여 환급 발생할 경우, 매년 과다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기간 제한 없이 차감

※ 개정 전('17년)의 경우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에 대해 환급

○ (경정특례) 분식회계로 경고·주의 조치 받은 내국법인이 「지방세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한 경우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은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① (세액차감) 경정결과 과다 납부세액 발생 시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과다납부세액의 20%를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매년 차감

※ 경정일 이전 사업연도분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차감

② (차감세액) 다른 경정청구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아래 계산금액 차감

과다납부한 세액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과다계상한 과세표준/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환급특례)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① (합병·분할에 따른 해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 후 잔여 차감기간 동안 과다납부세액 차감

② (그 외 해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 환급

□ 징수와 환급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신고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 (지법 §103의27①)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시부과하거나 특별징수한 세액이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 또는 충당 (지법 §103의27② 및 지령§100의34)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환급 특례(지법 §103의62)

⇒ 초과납부하여 환급세액(특별징수세액)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본점 소재지 지자체 안분 신고서 기납부세액에 산입하여 신고하고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환급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중소기업(조특령 §2)이 법인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환급 가능 (지법 §103의28 참조)

❖ 환급신청세액 = MIN (①, ②)

①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begin{array}{c} \text{직전사업연도} \\ \text{법인지방소득세} \\ \text{산출세액} \end{array} - \left(\begin{array}{c} \text{직전사업연도} \\ \text{법인지방소득세} \\ \text{과세표준} \end{array} - \begin{array}{c} \text{소급공제} \\ \text{결손금액} \end{array} \right) \times \begin{array}{c} \text{직전사업연도} \\ \text{법인지방소득세} \\ \text{세율} \end{array}$$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begin{array}{c} \text{직전사업연도} \\ \text{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end{array} - \begin{array}{c} \text{직전사업연도} \\ \text{법인지방소득세 감면세액} \end{array}$$

※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간주('16년 개정)

※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만 신청은 불가

- 직전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부과된 세액이 있고, 당해연도에 신고한 법인 대상

※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 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전년도 부과세액이 있고, 현년도 자치단체 신고(기한후신고 포함)한 경우에는 소급공제 적용('18년 개정)

- 「지방세법」 제101조 제2항, 제103조의28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에 따라 환급세액을 결정할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지기법 §77① 5호)

⇒ 신고한 날이 법정 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법인에 추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감소,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세액 감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의 신청에 따른 환급 (지법 §103의28⑤ 각호)

□ 가산세 - 지방세법

-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할 경우, 징수금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부과(지법 §103의30 참조)
- '주주등의 명세서' 등을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된 제출기한 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제출 불필요

유의사항

- ※ 「지방세법」 법률 제 13427호 개정사항('15.7.24.)
 - 법인세 가산세의 10%로 규정, 「지방세법」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가 중복시 큰 가산세액 적용, 같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가산세 적용
 - ⇒ '15.5.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동업기업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국세 가산세 징수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지법 §103의57 참조)

❖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지법 §103의57 및 조특법 §100의25)

구 분	조특법 가산세액(㉠)	지방소득세 가산세액(㉡)
동업기업 소득의 명세 및 배분명세 신고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신고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4% ▶ 과소신고 : 과소신고 소득금액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10% ▶ ㉠ × 10%
동업기업 원천징수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X (①, ②), 한도[무(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 ① 무(과소)납부한 세액의 5% ② 무(과소)납부한 세액 × 일수 × 3/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10%

※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적용 됨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가산세*는 동업자의 가산세에 합산(지법 §103의54)

* 지방세법 제103조의30 및 제103조의57 가산세

□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지방세 모든 세목 동일 적용)**

- (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를 가산세 부과
 - * 그 신고로 납부할 세액이며,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 및 이자상당 가산액은 제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 부과
-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초과환급)받은 경우 일당 0.03%의 가산세 부과
 - (한도) 미납세액, 과소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100분의 75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3%에 일당 0.03%의 금액을 더하여 가산세 부과
 -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함
-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의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에 대해 1년 초과 2년 이내 1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6개월 이내 50% 감면
 - 기한후 신고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지연된 경우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50% 감면

○ 가산세 감면제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 예정 신고 이후 확정신고 전까지 신고 및 수정신고한 경우라도
-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 신고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 배제

* 지방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는 국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안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과소신고 가산세 미부과시 「지방세기본법」의 과소신고 가산세도 미부과

4 특별징수

□ 특별징수 개요

-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그 소득의 지급자(금융 기관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에서 미리 공제하여 지자체에 납부

* (비교) 개인은 이자·배당소득 뿐 아니라 근로·사업·연금·퇴직소득에 대하여도 특별징수

- (납세지) 이자·배당소득의 지급지(계좌개설지)

- 원칙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 지점 등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 하는 경우 : 사업장 소재지
-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 그 소득의 지급지

❖ 법인지방소득세 반기별 납부

지방세법 § 103의29 ⑤에서 「법인세법」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인 지방소득세 또한 반기별 납부를 인정함

☞ 법인세 반기별 납부 대상자

직전년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로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

□ 특별징수대상과 세율

원천징수대상 소득		세율
① 이자소득금액	일반 이자소득금액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의 이자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2.5%
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투자신탁의 이익		1.4%

□ 특별징수의무

-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에 납부

□ 내국법인 특별징수 시행 시기

-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지급기준으로 '15.1.1.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조)

*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예시) '14년 10.1.~12.31. 발생한 이자소득 10,000 원을 '15.1.15. 지급할 경우

① '14.10.1~ '14.12.31	② '15.1.15	③ '15.2.10.
이자소득 발생(10,000원)	1,400원 법인세 원천징수 140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8,460원 소득자에 지급	원천징수세액 1,400원 세무서 납부 특별징수세액 140원 지자체 납부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의무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납세자는 매년 확정신고시에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척 별지 42호의4(전산파일로 제출 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다음해 3월말까지('18.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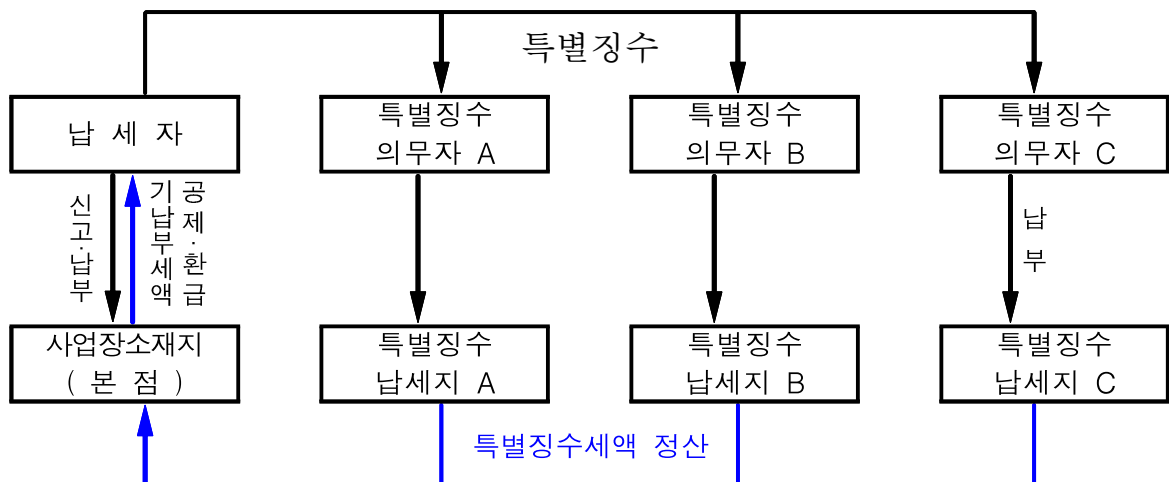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직접방문제출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자치단체
	서면제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 특별징수의무자가 법인일 경우 본점에서 지점의 특별징수명세서를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대리제출 가능

※ 세무대행인을 통해 대리 제출하는 경우에도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소재지 자치단체로 제출 가능

□ 특별징수세액(기납부세액) 본점 일괄 환급제도

○ 납세자는 특별징수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신고납세지)가 다르더라도 사업장 소재지에 확정신고(4월)할 때 특별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기납부세액인 특별징수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5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비영리법인의 범위

- 내국법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법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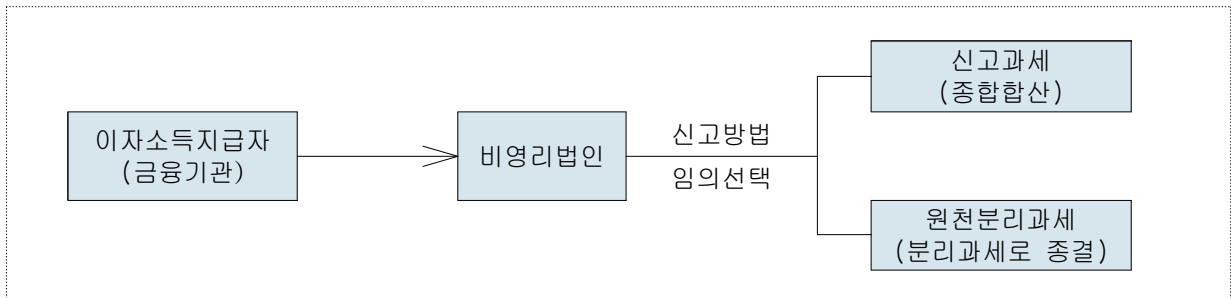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법」 제32조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국제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음

- ❖ 법인세 신고대상 수익사업
 - 제조업, 도·소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 이자소득 (예외,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분리과세 선택가능)
 - 배당소득
 - 주식·신주인수권·출자 지분 양도수입
 - 부동산에 관한 건리, 기타 자산 양도 수입
 - 고정자산의 처분수입(3년간 고유목적사업 사용분 제외)
 - 채권 등 매도의 매매익

□ 비영리내국법인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완납적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음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부분은 과세표준신고시 제외가능(법법§62①)

⇒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지령 §100의22 ②)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특례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6 서식에 의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음

□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비영리내국법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토지·건물, 주식·출자지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은 아래 두 가지 중 비영리내국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 가능

① 일반적인 방법 :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자산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②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

○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시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 양도소득세(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으로 계산한 경우(지법§103조의32⑤)

- (과세표준 신고 불필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
- (과세표준 신고 필요) 누진세율 적용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분	대상소득	과세특례
이자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103의32①)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이익 제외)	‘①과세표준 신고’ 또는 ‘②과세표준 신고 X’ 선택 가능 ①신고O ; 특별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간주 ②신고X ; 과세종결
양도소득 과세특례 (§103의32 ③④)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 (사업소득 있는 법인 제외)	‘①과세표준 신고’ 또는 ‘②양도소득을 준용하여 신고’ 선택 가능 ①과표신고 ;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준용하여 법인 지방소득세로 납부 ②양도준용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준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 (별지 제43호의10 서식) ⇒ ②신고납부 이후 ①신고납부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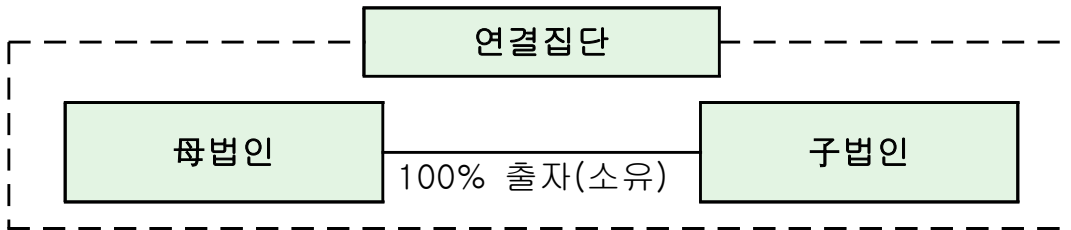
※ 법인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법 §29)’ 특례의 경우 과세표준 이전 단계이므로 지방세법에 미규정

V.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연결납세방식 개요

- (개념)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이지만, 경제적으로 한 묶음인 기업 집단에 대해서 기업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방식*

*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주식 100% 소유)하는 내국법인(완전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의 관할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적용 (법법 §76의8①)



- (도입 취지) 연결법인간 결손금 통산을 통하여 세제상 불이익 방지 및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도모

❖ 용어의 정의 (지법 §85①)

구분	내용
연결납세방식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
연결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내국법인 (모법인, 자법인A, 자법인B)
연결집단	연결법인 전체 (모법인 + 자법인A + 자법인B)
연결모법인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 (모법인)
연결자법인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자법인A, 자법인B)
연결사업연도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 세액계산

-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 (지법 §103의35 참조)

❖ 연결납부세액 계산순서 (법법 제2장의3 및 지법 §103의34~36)

순서		내용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산출	· 각 연결법인별로 개별세무조정을 통해 산출
②	연결조정항목 제거 (개별세무조정 취소)	·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 · 각 연결법인의 접대비/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손금에 산입
③	내부거래 손익조정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수입배당금, 접대비, 대손충당금 등 조정
④	연결조정항목 배분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기부금/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 재수행 후 결과를 연결법인별로 배분
⑤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출	· ①~④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산 (예시 : 母 500 + 子A 300 - 子B 200 = 600)
⑥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⑤) 중 해당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 (예시 : 母 600×5/8, 子A 600×3/8)
⑦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법인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⑥)’에서 해당법인의 이월결손금, 다른법인의 이월결손금, 해당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차감
⑧	각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출	· 연결법인별 ‘과세표준 개별귀속액(⑦)’을 합산
⑨	연결산출세액	· 연결과세표준(⑧)×세율
⑩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과세표준개별귀속액(⑦)×연결세율* * 연결세율 = 연결산출세액 / 연결과세표준
⑪	연결법인별 납부세액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⑩)에서 각 연결법인에 적용하는 세액공제·감면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 (연결집단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 단위별로 계산)
⑫	연결납부세액	· ‘연결법인별 납부세액(⑪)’을 합산

※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결산출세액에 합산

□ 신고 및 납부

- (신고기한)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지법 §103의37 참조)
 - ※ 연결 과세표준등 신고 기한 (법법§76의17)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가능
 - 연결사업연도소득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의무는 연결모법인에게만 있으므로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음
- (신고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와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와 포기,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나, 1개월 이내에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음
 - ※ 지법 제103조의37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는 연결모법인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가능

유의사항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연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와 함께 각 연결법인의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도 제출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도 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부과(일반법인과 동일)

- (안분방법) ① 산출세액 계산 → 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사업장 면적 안분 → ③ 관할 지자체의 탄력세율 반영한 세액을 가감 → ④ 지자체별 공제·감면, 가산세, 기납부 세액 반영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사례

(사례) 2017.1.1.~2017.12.31.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자료가 아래와 같을 경우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계산

< 법인세 과세자료 >

구 분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합계
각 사업연도 소득	80억	35억	△21억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90억	30억	△20억	100억
연결방식 도입 후 결손금	-	5억	-	5억
법인세 소득공제	15억	-	-	15억
법인세 세액공제	1.85억	0.95억	-	2.8억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2억	1억	-	3억

< 안분율 >

구 분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합계
가 지방	50%	30%	-	-
나 지방	30%	-	-	-
다 지방	20%	70%	100%	-
합 계	100%	100%	100%	-

※ 모법인S의 본점은 나 지방, 자법인A의 본점은 다 지방에 소재

(계산) 법인세는 13억원(중간예납 3억원 포함)*, 법인지방소득세는 1억5,800만원

* 법인세 세액공제 2.8억원이 차감된 금액임

▶ 산출세액 계산

구 분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합계
연결사업연도 소득	90억	30억	△20억	100억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75억	25억	-	100억
결손금 공제 (자사)	-	5억	-	-
소득공제	15억	-	-	-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60억	20억	-	80억
연결산출세액	연결과세표준 × 2% - 200만원			1.58억
연결세율	연결산출세액/연결과세표준			1.975%
연결법인별산출세액	11,850만 ¹⁾	3,950만 ²⁾	-	1.58억

※ 1) 60억×1.975% = 11,850만 2) 20억×1.975% = 3,950만

▶ 안분내역

구 분	모법인S	자법인A	합계
가 지방	5,925만 (50%)	1,185만 (30%)	7,110만
나 지방	3,555만 (30%)	-	3,555만
다 지방	2,370만 (20%)	2,765만 (70%)	5,135만
합 계	11,850만	3,950만	15,800만

⇒ 모법인이 '가'에 7,110만원, '나'에 3,555만원, '다'에 5,135만원을 각각 납부

<모법인 'S'가 '가'지방에 신고납부할 명세>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연 결	①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②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③법인명	S	④전화번호	00-000-0000
모 법 인	⑤대표자 성명	O O O	⑥전자우편주소	
	⑦소재지	'나' 시 00구 00동 00-00		
해 당 사 업 장	⑧명칭	S '가'시 지점	⑨연락처	
	⑩소재지	'가' 시 00구 00동 00-00		

□ 연결집단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합 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⑯연 결 수 입 금 액	(30,000,000,000)			
⑰(연 결) 과 세 표 준	8,000,000,000			
⑳연 결 산 출 세 액	158,000,000			158,000,000
㉑총 부 담 세 액	158,000,000			158,000,000
㉒기 납 부 세 액				
㉓차 감 납 부 할 세 액	158,000,000			158,000,000

□ 안분율의 계산

㉔ 안분율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m ²)									안분율(% (소수점 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S	100	30	30	600	420	70	500	400	80	-	-	-	100	20	20	50.0000%
A	20	10	50	200	20	10	100	20	20	100	-	-	-	-	-	30.0000%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㉕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법인명	관계	법인 등록 번호	법인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지방 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 공제 · 감 면액	납세지별 감면 분 가 납 부 세 액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경정· 수정신 고 등 가감액	탄력세 율적용 조정세 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본점 소재지 시군구
								특별징 수세액	수시부 과세액				
S	모	00000	1,185,000,000	118,500,000	59,250,000							59,250,000	나
A	자	00000	395,000,000	39,500,000	11,850,000							11,850,000	다
합 계					71,100,000							71,100,000	

VI.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청산소득 개요

- (개념) 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 경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금액, 각 사업 연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을 최종적으로 정산
- (과세소득의 범위)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납세의무를 부담 (지법 §87③ 및 법법 §3① 참조)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법인세법」 상 청산소득금액과 동일 (지법 §103의41 참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의 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
--------------------	---	-----------	---	---------------------

* 잔여재산의 일부를 배분한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해산등기일부터 사업계속등기일까지 사이의 잔여재산 분배액의 총합계액

- (세율) 「지방세법」 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동일 (지법 §103의42 참조)

□ 신고·납부

- (신고) 「법인세법」 제84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 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지법 §103의43① 참조)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법법§84 ①)

-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청산중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한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간신고 (법법 §85)

-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경우 : 분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미확정된 경우 :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납부) 「법인세법」 제84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지법 §103의43② 참조)
 -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므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 납부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구분	내용
신고·납부 기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세법상 신고기한과 동일
안분여부	사업연도의 종료일(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
신고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 서식)

유의사항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및 동업기업전환법인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세와 동일함
- 「법인세법」에 따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청산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가산금 적용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을 미징수 (지법 §103의46① 참조)
- (조직변경 비과세) 내국법인이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비과세 (지법 §103의46② 참조)

Ⅶ.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외국법인 개요

- (개념) 국외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국내사업장 관련·귀속여부 및 부동산소득 존재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짐
-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국내 원천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 (지법 §87③ 및 법법 §3 참조)
- (조세조약) 조세조약은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법인 포함)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특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

구분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국내소재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	납세의무 없음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		

❖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권의 제한 사례

구분	내용
국내원천소득 범위 상이	○ 조세조약에서 국내세법상 <u>국내원천소득 범위와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u> 예) 국내에서 자산등 사용 또는 대가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이나, 조세조약은 사용료를 국내거주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미부여	○ 국내세법상 <u>국내원천소득의 과세권을 원천지국에 미부여하는 경우</u> 예)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시에만 원천지국에 과세권 부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율 제한	○ 조세조약에서 <u>원천지국의 세율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경우</u> 예)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일정세율 (통상 5%~15%)을 초과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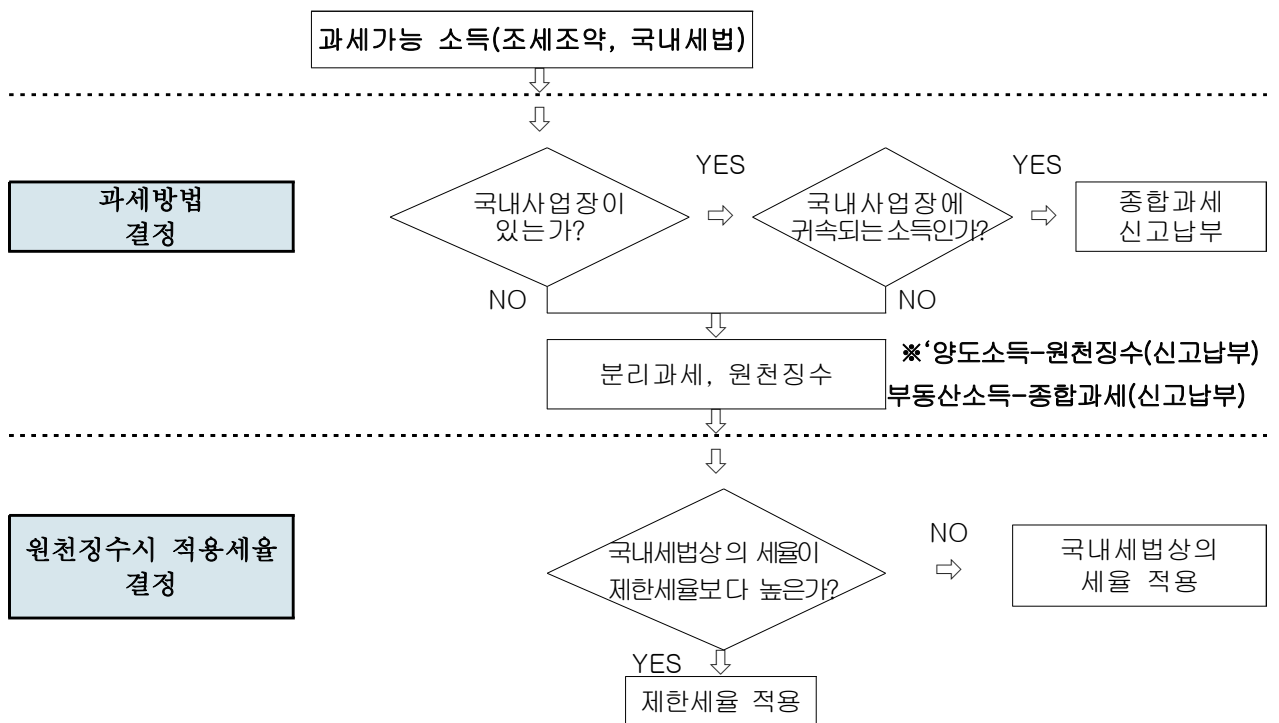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 소득(3호)이 있는 외국법인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하지 않음 (지법 §103의47① 및 법법 §91① 참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투자신탁의 이익은 내국법인과 같이 예납적 원천징수대상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원천소득(3호 제외)을 지급하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하여 납부 (지법 §103의52 및 법법 §98 참조)

※ 원천(특별)징수 당한 외국법인은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양도소득(7호)의 경우에는 예납적 원천(특별)징수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외국법인의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 국내사업장의 범위(법법 §94 ①)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및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 (법법 §93)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¹⁾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원천징수세율 (법법 §98)	
1호	이자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¹⁾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 (채권 : 14%)	
2호	배당소득			20%	
4호	선박등 임대소득			2%	
5호	사업소득			2%	
8호	사용료소득			20%	
9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0호	기타소득			20%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신고·납부 가능)	20%
7호	양도소득			예납적 원천징수 후 ²⁾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3호	부동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도 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법법 §97① 및 법법 §73) 및 특정한적용역소득(법법 §98⑧)은 예납적 원천징수하여야 함
- 2)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원천징수(법법 §98①) 및 특별징수(지법 §103의52)하고,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지법 §103의51)

- 외국법인이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 신청 가능 (지법 §103의51② 참조)

※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신청한 것으로 봄 (지령 §100의27①)

-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에 기한연장일수 1일당 1만분의3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

유의사항

-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 연장은 외국법인에만 적용*되며,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제6절 준용)에 신고기한 연장일수를 더한 기간까지 신고납부 해야함

□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법인(비영리외국 법인은 제외)의 지점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 (지법 §103의50 참조)
- ②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9호)하거나 국내소재 자산을 증여(10호)받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지법 §103의51⑤ 참조)

◆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법법 §98의2, 지령§100의28)

구분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과세기준 충족 (지령 §100조의28 1호)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유가증권 양도 (지령 §100조의28 2호)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자산 증여 (지령 §100조의28 3호)
대상 자산	내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 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	국내에 있는 자산
요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div> <p>주식발행법인의 동일 사업연도에 2회이상 양도하여 조세조약상 과세기준 충족</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div> <p>유가증권 ↓ 양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div> <p>국내자산 ↑ 증여</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div>
신고 세액	양도당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10%	양도소득×MIN(①,②)×10% ① 양도가액의 10% ② 양도차익의 20%	증여소득×20%×10%
납세지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해당자산의 소재지 (유가증권의 경우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내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다음달 10일* 까지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법인세법상 신고기한+1개월			
신고 서식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별지 제45호의2 서식)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별지 제45호의3 서식)	외국법인 증여소득 신고서 (별지 제45호의4 서식)

- ③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인적용역소득(6호)이 특별징수된 외국법인은 “소득 - 관련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용역제공기간 종료일부턴 4개월* 이내에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기 특별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특례의 신고·납부기한은 3개월(법법 §99)

Ⅷ.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개요

- (개념) 동업기업을 도관(Pass through entity)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 일반법인 과세 vs. 동업기업 과세특례 비교

일반법인 과세	동업기업 과세특례

❖ 용어의 정의 (조특법 §100의14)

구분	내용
동업기업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동업자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배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동업자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지분가액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
분배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

- (도입 취지) 동업기업과 동업자의 이중과세문제 해결, 기업과세 선진화 및 조합·인적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컨소시엄) 활성화 지원
- (적용 범위)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 (조특법 §100의15)
 - ※ 적용대상 동업기업 :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법무법인, 법무조합, 특허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등) 및 특정 외국단체

□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동업기업) 납세의무는 없으나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각 동업자에게 통지 (조특법 §100의23)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 ⇒ 지방소득세에 관한 협력의무는 없으나, 동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부과시 그 10%의 가산세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부과
- (동업자)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 (지법 §103의53① 참조)
- (동업기업 전환법인)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한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 (지법 §103의53①,② 참조)
 - *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구분	내용
신고·납부 기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u>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준청산일) 이후 3개월*</u> 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법상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안분여부	준청산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
신고서식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의6 서식)

유의사항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조특법 § 100의16 ⑤)하여야 하지만,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 기한내 전액 납부하여야 함

□ 동업기업의 배분

- (소득금액)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 (지법 §103의54① 및 조특법 §100의18① 참조)
⇒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에 포함
- (세액공제 등) 동업기업과 관련된 세액공제 등*은 동업자간의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 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 (지법 §103의54 참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특별징수된 세액(지법 §103의29),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지법 §103의30),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지법 §103의57),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지법 §103의31)
⇒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 소득세를 신고·납부시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 또는 가산
- (배분명세서 통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를 받은 경우 국세청이 동업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지자체에 통보 (지법 §103의59 ②, '17년 개정사항)
⇒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지령 §100의32)

구분	내용	
세액공제 등의 계산	세액공제·감면, 특별징수세액, 가산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	
배분 받은 세액공제 등의 처리	세액공제·감면	산출세액에서 공제
	특별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산세	산출세액에 합산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 (동업자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

□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일반주식 또는 특정주식(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양도소득 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도 과세함 (지법 §103의55 및 조특법 §100의21 참조)

* 동업기업의 지분가액 = 동업기업의 출자총액 × 동업자의 출자비율 ± 지분가액 증감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배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금액을 특별징수하여 납부 (지법 §103의56 및 조특법 §100의24 참조)

* 동업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조특법 §100의24⑧)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실무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 지방세법령 규정 및 예규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

발행일자 | 2018년 3월

발행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집필·편집 | (총괄) 지방세정책과장 김성기

행정사무관 최규웅

주 무 관 김대철

주 무 관 남건욱

※ 이 책자의 내용은 무단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